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2년 3월 11일
- 나. 제안자: 황영호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5일
- 라. 상정일자: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3.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영호 의원)

□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 근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추첨관리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에서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변경 (안 제6조)

- 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외국인 가능 조항 신설 (안 제7조)
- 라. 주민자치회 위원 본인 사퇴로 인한 해촉 사유 추가 (안 제12조)
- 마. 동 주민도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 간사 선임 요건 완화 (안 제16조)
- 바. 주민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배부 조항 신설 (안 제19조)
- 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사항 신설 (안 제24조 ~ 제30조)
- 아. 자치회관 운영사항 신설 (안 제31조 ~ 제41조)
- 자.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 가능함을 명시 (안 제34조)
- 차.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매년 1월말까지로 변경 (안 제41조)
- 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을 한부모가족 등으로 확대 (별표 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2)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나.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다. 입법예고(2022. 3. 11. ~ 3. 16.)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¹⁾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1) 주민자치회 사업대상

- 2019년 5개동(등촌2동, 화곡3동, 화곡6동, 우장산동, 방화3동) 시범사업 실시
- 2021년 나머지 15개동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

나. 주요 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6조에서 추천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장의 역할 및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 안 제7조에서는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위원의 자격에 외국인 가능 조항²⁾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이수조건을 완화³⁾하여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높임
- 안 제12조에서 본인 사퇴로 인한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위원의 해제’를 ‘해촉’로 정비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 안 제16조에서는 간사 선임 조건을 동 주민까지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배부 조항을 신설⁴⁾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2) **위원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3) **주민자치소양 강화교육:** 당초(위원 모집 공고일 전까지) → 변경(신청서 접수 후 선정전까지)

4)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기부행위의 예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안 제24조에서 안30조에까지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사항을 신설함
- 안 제31조에서 안41조에까지는 자치회관과의 유기적·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4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성을 명시함
- 안 제41조에서는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 제출 기한⁵⁾을 매년 1월 말일로 조정하고
- 별표에서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 가족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확대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등의 근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과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조례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 당초 매년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구 예산이나 업무보고가 확정되지 않아 연간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9년 2월 5개 시범동에 주민자치 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개 전 동으로 확대 풀뿌리 자치 활성화의 기반⁶⁾이 되고 있음
- 주민자치 사업 진행 과정의 시행착오와 개선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회관 운영 등의 근거가 되었던 조례와 통합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 다만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와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6) 2021년 주요 실적

- 정책공유회: 동별 자치계획 제안서 취합하여 의제 모니터링 진행
- 주민총회: 20개 전동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총 7,871명 참여, 141개 자치계획 선정)
-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사업경과보고 및 동별 활동 사례발표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주민자치회의 기능 조정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원활한 조례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제2호 중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건의 및 협의”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심사 등의 업무” 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 제출 등의 업무” 로 한다.

안 제19조제5항 중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강서구 및 동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를 “동장 및 동소속 관계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로 한다.(붙임 수정대비표 참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4조(기능) (생 략)</p> <p>1. (생 략)</p> <p>2. <u>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u></p> <p>3. ~ 4. (생 략)</p> <p>5. <u>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의 업무</u></p> <p>6. (생 략)</p>	<p>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건의 및 협의</p> <p>3. ~ 4. (현행과 같음)</p> <p>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 제출 등의 업무</p> <p>6. (현행과 같음)</p>
<p>제19조(주민총회)</p> <p>① ~ ④ (생 략)</p> <p>⑤ <u>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강서구 및 동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⑥ (생 략)</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동장 및 동소속관계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p> <p>⑥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통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